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박영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27
----------	------

발의연월일 : 2026. 6. 8.

발의의원 : 박영동 의원,
김보경 의원, 신동윤 의원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리공연에 대한 지원체계와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거리공연가의 자율적인 예술 활동을 도모하고 군민들에게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달성군의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군수의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거리공연 장소의 운영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마.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무용,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거리공연 장소”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리공연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공연 활동 지원
2. 거리공연가의 교류 협력 지원
3.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등) 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질서유지) 군수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 및 그 외 민원 사항 등을 고려하여 거리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군수는 거리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법인·단체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공연 활동 지원, 거리공연가 간 교류 협력 지원 및 거리 공연 장소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4조~제5조)
- 향후 관련 지원사업을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제2호)

3. 미첨부 사유

-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 및 운영은 신규 부지 매입이나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지양하고, 관내 기존 공공장소(도로, 광장, 공원 등) 및 유휴 공간을 다각도로 연계·활용할 계획인바 조례 시행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지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세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주관 부서의 집행계획 수립 및 별도의 예산 심의·편성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음.
- 본 조례안은 달성군 내 거리공연 자원을 발굴·육성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따라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됨.

작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 명 (연 락 처)

박 영 동 (☎ 2055)